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5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각 1/2씩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3. 19. 접수 제16246호 및 16247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 E(F생)와 소외 D(G생)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그 슬하에 자녀로 장남 소외 H(I생), 장녀 피고 B(J생), 차녀 피고 C(K생), 3녀 소외 L(M생), 차남 원고 A(N생)을 두었다.

나. 망 E는 ① 2011. 7. 28. 구미시 O 임야 3,967㎡(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331/3,967 지분에 관하여 2011.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1. 8. 31. 구미시 P 임야 6,611㎡(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1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D(상속분 3/13)와 직계비속인 원고, 피고들, H, L이 망인(직계비속별로 상속분 각 2/13)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D는 ① 2018. 3. 19. 제1 부동산 중 1,986/103,142 지분(= 망인 소유 지분 331/3,967 × 상속분 3/13)에 관하여 2016. 3. 19.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8. 3. 19. 제2 부동산 중 6/26 지분(= 망인 소유 지분 1/1 × 상속분 3/13)에 관하여 2016. 3. 19.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2018.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가 상속지분등기를 마친 각 지분에 관하여 1/2씩 2018.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이 법원의 2020. 6. 20.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채권자대위소송임을 명확히 하였다).

가. D는 2018. 3.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들은 같은 날 D와의 매매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는 D의 직계비속으로서 ‘D가 장래에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인 이 사건 각 지분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고는 위의 권리를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은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권’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상속개시 전에 추정상속인이 가지는 일종의 기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인바(민법 제997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는 그의 추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체적이고 구체적 권리로서의 상속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상속개시 이전에는 피상속인에게 재산처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추정상속인은 이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을 가지는 추정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는 그 유류분을 미리 보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등기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D가 생존하여 있음을 전제로 그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앞서 본 소송요건의 흠결은 그 성질상 이를 보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허민

별지

목 록

1. 구미시 O 임야 3,967㎡ 중 1,986/103,142 지분
2. 구미시 P 임야 6,611㎡ 중 6/26 지분. 끝.